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2459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8. 5. 9.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9. 원고에게 한 재산세 2,035,238,560원의 부과처분 중 176,813,1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가. 원고는 체육시설(골프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운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1. 11. 15.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redacted]클럽'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인 [redacted]군 [redacted]읍 [redacted]리 [redacted] 외 [redacted] 필지 합계 3,098,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중과세율(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분 토지 재산세를 2,035,238,56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1)]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정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게 ① 재산세 1,017,619,280원 및 지방교육세 201,485,820원을 결정·고지하고(과세번호 001445, 납기일 2017. 10. 10.), ② 재산세 1,017,619,280원 및 지방교육세 201,485,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과세번호 000234호, 납기일 2017. 11. 24.).
따라서 재산세는 합계 2,035,238,560원이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승계취득'한 골프장은 1999. 1. 1. 이후부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는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는 위 괄호 부분을 전부 삭제하였다.

이처럼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대한 지방세법 규정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승계취득한 골프장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토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으로 구분하고, ② 그중 분리과세대상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가 포함되며, ③ 분리과세대상인 토지 중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과세표준에 1천분의 40의 표준세율(중과세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한편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① 골프장(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및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②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이처럼 지방세법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본다거나 또는 승계취득한 골프장용 토지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 수익 ·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그 반면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의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골프장용 토지를 '원시취득한 경우'와 '승계취득한 경우'를 구분하여 골프장용 토지를 '원시취득한 경우'에만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의 종류나 담세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산의 종류와 담세력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그 재산의 취득방식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는 점, ②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 과세요건 및 목적이 확연히 구별되므로 지방세법의 재산세 중과세 규정에서 그 과세대상에 관하여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일부를 원용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중과세 과세대상을 취득세 중과세 과세대상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를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다.

3)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와 관련된 지방세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같다.

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항	규정
제112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別莊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施設을 增設하여 變更登錄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제234조의15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 제1항 제2호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위와 같이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① 제112조 제2항에서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 한하여 골프장용 토지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반면에, ②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에서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로써 재산세는 골프장용 토지의 해당 골프장이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조항	규정
제112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別莊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82조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위와 같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① 제112조 제2항에서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 중과세 대상을 확대하였고, ② 그런데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이로써 위 괄호 안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으로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

다)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항	규정
제13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위와 같이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및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그 조항의 번호와 일부 문구만 다소 바뀌었을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및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과 동일하다.

라)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의 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용 법률을 말한다)

조항	규정
제13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위와 같이 지방세법은 ① 제13조 제5항은 개정 전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② 다만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괄호 부분을 전부 삭제하였다.

마) 이러한 관계 규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승계취득한 골프장용 토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입법자의 의도는 골프장용 토지는 처음부터 그 취득방식에 관계없이 체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중과세하려고 하였음이 명백하다.

즉,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용 토지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대한 규정인 제112조 제2항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제112조 제2항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용 토지만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모든 골프장용 토지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라는 규정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용 토지를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로까지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이를 인용하는 재산세 중과세 규정[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는 종전부터 있던 괄호 부분('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분을 말한다)을 삭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마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골프장용 토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오해할 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위 괄호 부분을 전부 삭제함으로써 골프장용 토지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명백히 한 것이다.

(2) ㈎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승계취득한 골프장용 토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음으로 골프장용 토지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에서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 한하여' 골프장용 토지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여 '승계취득'의 경우는 이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지방세법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가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종전부터 있던 괄호 부분을 전부 삭제함으로써 취득세 중과세 대상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을 완전히 동일하게 규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승계취득한 골프장용 토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승계취득한 골프장용 토지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도 승계취득한 골프장용 토지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그리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 과세요건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대한 지방세법 규정을 해석하면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대한 규정('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 한하여' 부분)의 반대해석까지 준용하여 '승계취득'한 골프장용 토지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4) 재산세 중과세의 목적 및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골프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골프장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별다른 세법상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다른 사치성 재산(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유독 '승계취득'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중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박상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판사 김웅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別莊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別莊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施設을 增設하여 變更登錄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제234조의15(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 제1항 제2호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끝.